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6.

발 의 자 : 허종식 · 유동수 · 박찬대
노종면 · 김교홍 · 이훈기
박 정 · 허성무 · 복기왕
이용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·환경보호·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,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·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.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·사회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며, 원자력·화력발전은 탄력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이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.

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, 원자력·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

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·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46조 등).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1조 중 “개선사업”을 “개선사업,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”으로 한다.

제142조제1항 중 “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”을 “개선사업,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지역개발사업”으로 한다.

제146조제2항제3호 단서 중 “0. 6원”을 “1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46조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·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·보전, 환경보호·개선, 안전·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<u>개선사업</u>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.	제14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개선사업,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</u> ----- ----- -----.
제142조(과세대상)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<u>개선사업</u> 및 <u>지역개발사업</u>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.	제142조(과세대상) ① ----- ----- <u>개선사업</u> , <u>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</u> 및 <u>지역개발사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생 략)	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현 행과 같음)
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	② ----- -----

음 각 호와 같다. 1. · 2. (생 략) 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7원. 다만, 액화 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<u>0. 6원으로 한다.</u> ③ · ④ (생 략)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 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<u>다만,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</u>	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<u>1원</u>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<단서 삭제></u>
--	--